

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9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물가 상승률 반영을 통한 사용 요금의 현실화 및 징수 대상 종목 추가 등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·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정비(안 별표 1)
- 나. 구미시 거주자 사용료 감면을 변경(안 제11조제1항제3호)
- 다. 용어, 띄어쓰기 및 인용사항 정비(안 제2조, 제3조, 제6조~제14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수상레저안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

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임수동 382-2번지”를 “수출대로 326-20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장비대여”를 “장비 대여”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수탁조건”을 “수탁 조건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사전승인”을 “사전 승인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중 “연휴기간”을 “연휴 기간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전단 중 “초과사용료”를 “초과 사용료”로, “납부 하여야”를 “납부하여야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 중 “전액감면”을 “전액 감면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중 “장애정도”를 “장애 정도”로 하고, 같은 호 바목 중 “독립유공자 예우”를 “독립유공자예우”로 한다.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호 아목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”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50”을 “30”으로 한다.

사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각
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제12조 중 “반환 할”을 “반환할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안전수칙”을 “안전 수칙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재산손실”을 “재산 손실”로 한다.

별지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

수상레포트스 체험센터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■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[별표 1]

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료(제10조제1항 관련)

구분	종목(1인 1종목 기준)	사용방법	사용자	사용료(원)
체험	수상스키, 웨이크보드	1회	성 인	25,000
			청소년·노인	20,000
	모터보트	1회	성 인	15,000
			청소년·노인	10,000
	기타 놀이기구 (바나나보트 등)	1회	성 인	20,000
			청소년·노인	15,000
	카누, 카약, 수상자전거	1회 1시간	성 인	5,000
			청소년·노인	3,000
	래프팅 (용선)	1회 1시간	성 인	5,000
			청소년·노인	3,000
	윈드서핑, 덩기요트	1회 3시간	성 인	10,000
			청소년·노인	8,000
교육	수상스키, 웨이크보드	1회	성 인	50,000
			청소년·노인	40,000
	카누, 카약	1회 3시간	성 인	15,000
			청소년·노인	9,000
	윈드서핑, 덩기요트	1회 3시간	성 인	10,000
			청소년·노인	8,000
<p>○ 12세 이하는 보호자 동승 조건으로 청소년·노인 요금을 적용함</p> <p>○ 사용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. 청소년 : 13세 이상 19세 미만/ 성인 : 19세 이상 65세 미만/ 노인 : 65세 이상</p> <p>○ 사용료는 시설 이용료 및 부가세 포함 금액임</p> <p>○ 래프팅(용선) 1회 이용 단체(10명 이상)입장자는 20%를 감액한 사용료 징수</p> <p>○ 명시되지 않은 종목은 유사종목 사용료를 적용</p>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위치)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(이하 “수상레포츠 체험센터”라 한다)는 구미시 <u>인수동 382-2번지</u> 일원에 둔다.</p>	<p>제2조(위치) ----- ----- ----- <u>수출대로 326-20</u> -----.</p>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“사용료”란 수상레포츠 프로그램 체험 또는 <u>장비대여</u>를 위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장비 대여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위·수탁계약의 해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p>1. 수탁자가 조례나 <u>수탁조건</u>을 위반한 경우</p> <p>2.·3. (생략)</p>	<p>제6조(위·수탁계약의 해지) 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수탁 조건</u>----- 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) ① 수탁자가 위탁 기간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<u>사전승인</u>을 받아</p>	<p>제7조(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사전 승인</u>-----</p>

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9조(개장 및 휴장) ① 수상레포
츠 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
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.

1. (생 략)

2. 설, 추석 연휴기간

3. (생 략)

②·③ (생 략)

제10조(사용료) ① (생 략)

②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
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사
용 종료 즉시 납부 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
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
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

제11조(사용료 감면) ① 관리자는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
수 있다.

1. 전액감면

가. ~ 다. (생 략)

2. 100분의 60 감면

가. ~ 라. (생 략)

마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
등록장애인(이 경우 장애정도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개장 및 휴장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연휴 기간

3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용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초과 사용료-----
----- 납부하여야 -----.

-----.

제11조(사용료 감면) ① -----

-----.

1. 전액 감면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-----
----- 장애 정도

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
1명을 포함한다)

바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
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
에 해당하는 사람

사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
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
2조제2호에

아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
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
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사람

자. ~ 타. (생략)

3. 100분의 50 감면 : 시에 주소
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

② (생략)

제12조(사용료의 반환) 관리자는
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
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.

제13조(사용자의 책임) ① 사용자
는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이용에
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
며,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
인하여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시
설 등이 파손되었거나 타인에게

바. 「독립유공자예우-----

사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
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
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사람

아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
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시행령」 제52조제1항 --

자. ~ 타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30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사용료의 반환) -----

----- 반환할 -----.

제13조(사용자의 책임) ① -----

----- 안전 수칙-----

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4조(보험 등의 가입) 관리자는 수상레포트즈 체험센터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은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49조를 준용한다.

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보험 등의 가입) -----

----- 재산 손실 -----

--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략)

□ 「수상레저안전법」

제42조(이용요금)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·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소 관 부 서		체 육 진 흥 과
입 안 자	과 장	박 미 선
	팀 장	이 상 용
	담 당 자	황 영 환 (480-4923)